

사단법인 한국교육자선교회 정관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(명칭) 이 법인은 “사단법인 한국교육자선교회”(이하 “본 회”라 한다)라 한다.

영어 명칭은 The Korean Christian Educators' Association(약칭 K.C.E.A)라 한다.

제 2 조(소재지) 본 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김상옥로 30(한국기독교연합회관 1312호)에 둔다.

제 3 조(목적) 본회는 기독교를 믿는 교직원의 신앙성숙과 교육 및 선교 역량을 함양하여 예수그리스도의 사랑을 바탕으로 교육하며 선교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4 조(사업)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.

- ① 교육선교지도자 비전캠프 및 양성 훈련
- ② 문서선교를 위한 서적 및 소식지 발간
- ③ 기독교교육자 역량 교육 및 연찬회 실시
- ④ 다음세대 양성을 위한 국·내외 협력 사업
- ⑤ 통일을 대비한 북한 교육선교 기반 조성
- ⑥ 기타 본 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제반 활동

제 2 장 회 원

제 5 조(회원의 자격) 회원 구분 및 자격은 다음과 같다.

- ①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고, 소정의 입회 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
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- ② 회원은 정회원, 준회원, 특별회원, 예비회원으로 구분한다.
- ③ 정회원은 전·현직 기독교 교직원으로서 각종 모임에 참석하고, 회비를 납부하는 자로 한다.
- ④ 준회원은 전·현직 기독교 교직원으로서 회비를 납부하지 않지만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
여 각종 활동에 참여하는 자로 한다.
- ⑤ 특별회원은 전·현직 기독교 교직원은 아니지만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고, 회비를 납부하
는 자로 한다.
- ⑥ 예비회원은 교원 양성기관에 재학하면서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고, 각종 활동에 참여하
는 자로 한다.

제 6 조(회원의 권리) 본 회 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.

- ① 본 회 회원은 본 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.
단, 준회원은 피선거권, 특별회원과 예비회원은 의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.
- ② 본 회 회원은 본 회의 제반 활동 및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.

제 7 조(회원의 의무) 본 회의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.

- ① 본 회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
- ② 총회 및 이사회 결의사항 이행
- ③ 본 회 활동 시 예배와 회의 참석
- ④ 소정의 회비 및 제 부담금 납부

제 8 조(회원의 탈퇴) 본 회의 회원은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.

제 9 조(회원의 상벌)

- ① 본 회의 발전에 공적이 있는 회원에 대하여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표창할 수 있다.
- ②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제명할 수 있다.

제 10조(고문)

- ① 본 회의는 기독교신앙이 투철하며 교육선교의 소명감이 있고, 덕망이 있는 분을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.
- ② 고문은 이사장의 자문에 응하며 총회와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
제 3 장 임 원

제11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 본 회의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
- ① 이사장 1인
- ② 부이사장 1인
- ③ 이사 20인(이사장, 부이사장 포함) 이내
- ④ 감사 2인

제12조(임원의 선임)

-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, 그 취임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한다.
-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.
-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.

제13조(임원의 해임) 임원이 다음의 행위를 한 경우 총회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.

- ①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
- ② 임원간의 분쟁,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
- ③ 본 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
제14조(임원의 선임 제한)

-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.
-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.

제15조(상임이사)

- ① 본 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.

② 상임이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.

제16조(임원의 임기)

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단, 이사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17조(임원의 직무)

① 이사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 의장이 된다.

②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고, 이사장이 위임한 사무를 집행하며 이사장 유고시에 그 임무를 대행한다.

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
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.

1. 본 회의 예산 및 결산과 재산상황 감사

2. 총회 및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 관련 사항 감사

3.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을 시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

4.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총회 또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

5. 본 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

제18조(이사장의 직무대행)

① 이사장의 유고시에는 부이사장이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
② 부이사장이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는 재적 과반수가 소집하고,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.

④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.

제 4 장 총 회

제19조(총회의 구성) 총회는 본 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.

제20조(대의원)

① 대의원은 본 회의 임원과 각 지방회 총회에서 선출된 자로 한다.

② 지방회별 대의원 정수는 이사회에서 정하고, 총 인원은 100명 이내로 한다.

제21조(구분 및 소집)

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 1회 1월 중에, 임시총회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이사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회의 7일전에 각 대의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.

제22조(총회 소집의 특례)

- ① 이사회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 1. 재적 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 2. 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 3. 재적대의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-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-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로 그 의장을 선출한다.

제23조(의결 정족수)

- ① 총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② 대의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대의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.
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본 회 정관 개정과 같은 주요 안건은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.

제24조(총회의 권한)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
- ① 법인 해산, 기본재산 처분(취득, 차입)에 관한 사항
- ② 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
- ③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
- ④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, 결산의 승인
- ⑤ 사업계획 및 사업 보고에 관한 사항, 보고의 승인
- ⑥ 기타 중요 사항

제25조(총회의결 제척사유) 대의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때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- ①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
-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 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

제 5 장 이 사 회

제26조(이사회의 구성 및 조직) 본 회의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조직한다.

- ① 이사회는 이사장, 부이사장, 이사로 구성한다.
- ② 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20인(이사장, 부이사장 포함) 이내로 한다.
- ③ 본 회의 감사는 2인 이하로 정한다.
- ④ 본 회의 운영을 위한 별도의 조직을 둘 수 있다.

제27조(구분 및 소집)

-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나누되 정기이사회는 연 1회 1월 중에 개최하되 이사회 의결에 따라 그 기일을 조정할 수 있다.

- ② 임시이사회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회장이 이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-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.
- ④ 이사회는 제3항의 통지 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. 다만,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,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.

제28조(이사회 소집의 특례)

- ① 이사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 - 1.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 - 2.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-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-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이사장의 유고시에 부이사장이 이사장의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④ 부이사장이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29조(서면결의)

- ① 이사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 이 경우에 이사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.

제30조(의결 정족수)

- ①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최하지 못한다.
- ② 이사회 의사는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- ④ 이사회 의결권은 타인에게 위임할 수 없다.

제31조(이사회 의결사항)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·결정한다.

- ①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
- ②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
- ③ 예산·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
- ④ 총회에서 위임받는 사항
- ⑤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
- ⑥ 기타 중요 사항

제 6장 재산과 회계

제32조(재산의 구분)

- ①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.
- ② 다음 “별지 1”에 해당하는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하고,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“별지 2”와 같이 보통재산으로 한다.
 1.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
 2.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
단, 기부 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구분하기 곤란한 것은 예외로 한다.
 3. 보통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
 4.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

제33조(기본재산의 처분 등)

- ① 본회의 기본재산을 처분(매도·증여·임대·교환 등)하고자 할 때에는 제49조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.
- ② 법인의 매수, 기부 채납,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.
-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, 보존 및 기타 관리(제1항 및 2항의 경우 제외)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-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목록을 변경하여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.

제34조(수입금) 우리 법인의 운영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
- ① 회원의 회비
- ② 사업 수익금
- ③ 선교 헌금과 기부금
- ④ 유관 기관의 보조금과 장려금
- ⑤ 기타 수입

제35조(회계연도)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른다.

제36조(예산편성)

- ① 본 회 세입세출 예산서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- ② 차기 년도의 사업계획서는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37조(결산)

- ① 당해 연도의 사업 실적서 및 결산서는 회계 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- ② 이 경우 재산 목록과 업무 현황 및 감사 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
제38조(회계 감사) 본 회의 감사는 회계 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한다.

제39조(임원의 보수)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.

제 7 장 사무 부서

제40조(사무국의 설치)

- ① 본 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.
- ② 사무국에 사무총장과 약간 명의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직원에게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일정액의 보수를 지급한다.

제41조(사무총장 등의 인준)

사무총장 및 직원은 이사회의 심의를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.

제42조(사무국의 직제)

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.

제 8 장 산하 기관 등

제43조(중앙회) 본 회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회를 두며, 각 지방회를 관장한다.

제44조(지방회) 본 회의는 특별시, 광역시 및 각 도에 지방회를 두며, 그 지방 내의 지역회를 관장한다.

제45조(지역회) 각 시·군·자치구에 지역회를 두며, 그 지역 내 각 교육기관의 신우회를 관장한다.

제46조(신우회) 각 학교나 직장에 신우회를 두며, 회원의 신앙을 권면하고 관리한다.

제47조(후원단체) 우리 회의 효율적인 후원을 위하여 후원단체를 두고, 상호 협력할 수 있다.

제 9 장 보 칙

제48조(법인해산)

- ①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대의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,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.
- ② 본 회를 해산할 때의 잔여 재산은 국가, 지방 단체 또는 본 회 설립 목적과 유사한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.

제49조(정관변경) 본 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제50조(규칙제정) 본 회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

- ① 본 회의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시행한다.
- ② 본 회의 산하 기관은 본 정관에 의거 독자적인 회칙을 제정·시행할 수 있다.